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2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이성운
김원이·박수현·윤준병
박지원·이개호·김영진
김영배·전종덕·송옥주
서미화·문금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

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
공할 것”을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
일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 ----- ----- ----- ----- ----- -----.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했다 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1. ----- ----- ----- ----- -----어선원으로 승선했다 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